

大田廣域市抗結核劑普及手數料

徵收條例廢止條例案

大 田 廣 域 市

大田廣域市抗結核劑普及手數料徵收條例廢止條例案

議 案
番 號 594

提出年月日 : 1995. 5.
提 出 者 : 大田廣域市長

1.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

- 1970년부터 抗結核劑 處方別 普及手數料를 大田廣域市 抗結核制 普及手數料의 規定에 依據 徵收 再活用 해왔으나,
- 結核豫防法(第29條) 및 同法 施行令(第22條)이 改正되어 抗結核 普及手數料 徵收에 관하여는 당해 地方自治團體(自治區)의 條例로 定하도록 規定되어 있어,
- 大田廣域市抗結核劑普及手數料徵收條例는 이를 廢止하려는것임

2. 參考事項

- 關聯法規
 - 結核豫防法 第29條 第3項
 - " 施行令 第22條 第2項
 - 大田廣域市 抗結核劑 普及手數料 徵收條例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대전광역시 자치구에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를 제정 시행하기 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關聯法規

□ 結核豫防法 第29條

第29條(傳染性 結核患者의 醫療) ①市.道知事는 保健福祉部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各 管轄區域내에 居住하는 傳染性結核患者에 대하여 迅速한 醫療를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93.12.27)

②第1項의 醫療를 專擔하는 醫師.看護師.臨床病理士 및 看護助務士(이하 “結核管理要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臨床研究에 所要되는 費用(醫歸의 경우에 限한다)과 結核傳染危險性에 대한 報償金을 支給할 수 있다. (改正 '87.11.28)

③第1項의 醫療를 받은 者로부터 徵收하는 手數料 또는 醫療費는 保健福祉部長官이 定하는 基準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改正 '93.12.27) (全文改正 '79.12.28)

□ 結核豫防法 施行規則 第22條

第22條 (권한의 위임) ①法 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의 權限중 다음 權限을 市·道知事에게 委任한다.

1. 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臨時 健康診斷命令
2. 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就業整備 및 禁止命令
3. 法 第2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入院命令

②法 第44條의 규정에 의하여 市·道知事의 權限중 다음의 權限을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에게 委任한다.

1. 法 第4條 第2항의 規定에 의한 정기 健康診斷 날짜 또는 期間의 指定
2. 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豫防接種의 公告 .
3. 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豫防接種證明書의 交付
4. 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傳染性結核患者에 대한 醫療의 實施

제 8편 보건사회 대전광역시 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 대전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1989. 1. 1
조례 제1713호]

개정 1994. 1. 11 조례 제 2346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결핵예방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서 결핵환자에 투약하는 항결핵제의 보급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일반환자"라 함은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의 의료보호증의 발급을 받지 아니한 결핵환자로서 보건소에 등록된 자 중 보건소장이 치료대상자로 선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수수료) 항결핵제의 처방별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4조 (수수료의 징수) 수수료는 환자가 등록되어 있는 당해 보건소장이 징수한다.

제5조 (수수료징수 및 불입) 수수료는 항결핵제 보급시마다 대전광역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제6조 (수수료 재활용) 징수된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결핵사업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결핵관리요원의 여비보조
2. 결핵관리요원의 기동력 확보를 위한 장비구입
3. 우수 결핵관리 요원의 시상금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핵사업비 .

제7조 (징수비 교부) 광역시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입된 징수금 중 그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로 당해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 1713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편 보건사회 대전광역시 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부 칙 (조례 제2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편 보건사회 대전광역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정수조례

(별표) <개정 94. 1. 11 조례 제2346호>

항결핵제 처방별 보급 수수료

(단위 : 원)

처방종류	기준	수수료
		일반환자
○ 에탐부톨+파라지나마이드+리팜피신	1인1개월	2,600
○ 에탐부톨+파라지나마이드+카나마이신	-	1,800
○ 파라지나마이드+리팜피신+카나마이신	-	3,400
○ 에탐부톨+리팜피신+카나마이신	-	2,400
○ 에탐부톨+파라지나마이드	-	1,000
○ 에탐부톨+리팜피신	-	1,600
○ 에탐부톨·아이나·파스·스트렙토마이신	-	무료

大田廣域市抗結核劑普及手數料徵收條例廢止條例案

審查報告

1995. 6. 1.

文教社會委員會

I. 審查經過

- 가. 提出日字 및 提案者 : 1995. 5. 24. 大田廣域市長
나. 回附日字 : 1995. 5. 29.
다. 上程日字 : 第 42回 大田廣域市 議會(臨時會)

第 1 次 文教社會 委員會 (1995. 6. 1)

上程, 審查, 議決

II. 提案說明 要旨（提案說明：保健社會局長）

1.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

- 1970년부터 抗結核劑 處方別 普及手數料를 大田廣域市 抗結核劑 普及手數料의 規定에 依據 徵收 再活用해 왔으나,
 - 結核豫防法(第29條) 및 同法 施行令(第22條)이 改正되어 抗結核普及手數料 徵收에 관하여는 當該 地方自治團體(自治區)의 條例로 定하도록 規定되어 있어,
 - 大田廣域市抗結核劑普及手數料徵收條例는 이를 廢止 하려는 것임

III.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專門委員: 金鎮鎬)

○. 本 案件은 結核豫防事業의 效率性 確保를 위하여 保健所에서 結核患者에게 투약하는 抗結核剤의 普及手數料를 「大田廣域市抗結核剤普及手數料徵收條例」의 規定에 따라 徵收 하여 왔으나

本 業務가 지난 94年 5月 27日 結核豫防法 施行令의 改正으로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權限委任됨에 따라 關聯 市條例를 廢止하고 區條例로 制定·施行코자 하는 内容으로써 별다른 問題點은 없는 것으로 思料됨

IV. 討論 要旨 : 省 略

V. 質疑 및 答辯要旨 : 省 略

VI. 審查結果 : 原案可決

VII. 其他 必要한 事項 : 없음